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447호)

2025. 2.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제안 및 회부	1
II. 주문 및 제안이유	1
III. 검토의견	5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5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5
3. 주요내용 검토	7
※ 참고자료	9
[참고자료 1] 장생 탄광 수몰 사고 개요	9

I. 제안 및 회부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33인

2. 제안일자 : 2025년 1월 10일

3. 회부일자 : 2025년 1월 13일

II. 주문 및 제안이유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 탄광(長生炭鑛)에서 수몰 사고가 일어나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역사적 비극을 깊이 애도하고 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단체, 희생자 유족, 각국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장생 탄광 수몰 사고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의 결과로 발생한 비극임을 인정하고,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83년이 지나도록 해저 갯도에 방치되어있는 희생자들의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갯도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유해발굴 작업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상호협력하여 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장생 탄광 수몰 사고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제안이유

장생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동부, 토코나미 해안에 위치하였던 해저 탄광으로, 위험한 해저 갯도 작업을 일본인 노동자들이 기피하여 주로 조선인 노동자에게 맡기었음. 이로 인해 속칭 ‘조선 탄광’으로 불리며 수몰 사고 직전까지 약 1,00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음.

1942년 2월 3일 오전 6시경, 해안 갯구에서 1,100m 떨어진 갯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해저 갯도의 천장이 무너졌고, 오전 8시경 갯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생매장되는 참사가 일어남. 이날 사고로 인한 사망자 183명 중 136명이 조선인 노동자였음. 사고 직후 일본 측은 2차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갯구(坑口)를 폐쇄하였고 희생자들의 유해는 단 한 구도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 남아있음.

한편, 장생 탄광은 1990년대까지 갯구와 탄광 유구(竪坑)가 남아있었으나 그 후 유구가 철거되고 갯구 위치도 알 수 없게 되었음. 현재 장생 탄광이 존재하였다는 유일한 증거로 원형 콘크리트 배기통 2개만이 남아있음.

사고 이후 장생 탄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듯했으나 최근 일본 시민단체 ‘장생 탄광 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회’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탄광의 갯구가 발견되었고 잠수부를 투입하여 갯도 내부를 일부 조사하는 등 탄광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다만 유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갯도 심층부(300m)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여 아직 유해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며 해당 시민단체는 올해 1월 말부터 사흘간 추가 잠수 조사를 벌일 계획에 있음.

이렇듯 일본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유해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해저 갯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에 의한 조사 실시나 민간조사에 대한 협력을 현시점에서는 전혀 생

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장생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대한민국 정부도 당사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상호협력하여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장생 탄광 수몰 사건을 국제사회가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희생자들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장생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를 결의함.

Ⅲ. 검토의견

1. 결의안의 제안 취지

이 결의안은 장생(長生) 탄광에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이 수몰된 사고(이하 “장생 탄광 수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① 일본 정부에 장생 탄광 수몰 사고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의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의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유해발굴 작업에 필요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며, ②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 정부와 상호협력하여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③ 국제사회에 동 사고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결의안의 제안 배경

장생 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약 1km 떨어진 장생 탄광 지하갱도에서 누수로 인해 바닷물이 밀려들며 작업 중이던 조선인 136명 및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사망한 사건임.

장생 탄광의 노동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면, 장생 탄광이 조선인을 동원한 수는 1,2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조선인 노무자들은 3미터가 넘는 울타리로 에워싸인 숙소에 감금되어 일본인 계원의 감시와 철저한 통제 속에서 채탄작업에 투입되었음. 또한, 채탄현장은 수시로 누수 사고가 발생하여 수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조선인 노무자는 회사 측의 허가 없이는 현장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붕괴의 위험성이 있어 채탄을 하여서는 안되는 지역에서의 작업도 강행되었음.¹⁾

장생 탄광 수몰 사고는 위와 같은 무리한 작업으로 인하여 탄광의 본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수몰 사고 후 탄광회사 측이 갹구를 폐쇄²⁾함에 따라 희생자 유해가 발굴되지 못하고 있음.

이후 일본 정부는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유해의 매몰 위치나 깊이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1)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54-55쪽.

2) 당시 생존자들의 구술에 따르면 경찰대와 탄광측이 물이 찬 갹구를 두꺼운 널빤지로 봉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갹내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던 노동자들이 수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갹구 폐쇄에 관한 생존자 진술>

이에 대해 김경봉 옹은 해수가 마을까지 솟구쳐 올라와 마을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 바람에 갹내에 생존해 있었을 지도 모를 남은 광부들의 생명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분노하였다. 그러나 설도술 옹은 해면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탄광주택지역으로 해수가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다만 유족들이 갹구로 진입하고자 몸부림치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아무튼 사고 발생 후 얼마 안되는 시간에 갹구가 널빤지로 봉쇄된 것은 사실로서 확인된다.

주: 김경봉 옹과 설도술 옹은 강제동원 노무자로, 사고 당시 갹외 단신숙소에 있었으며 갹구에서 사고를 목격하였다.

자료: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49쪽

3. 주요내용 검토

장생 탄광 수몰 사고는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노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채굴의 금지가 규정된 곳에서 무리한 채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유해발굴 및 봉환에 관한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동 결의안은 그 취지가 타당함.

현재 희생자 추모와 유해 발굴 등의 노력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³⁾ 민간의 노력에 기대는 것에서 나아가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 결의안의 제안이유가 일본 정부로 하여금 장생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결의안 제2호를 ‘일본 정부가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하여 제안 취지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장생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동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중으로, 일본 정부와 관련 소통을 해나가면서 유해 발굴 관련 일본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하에 일본 내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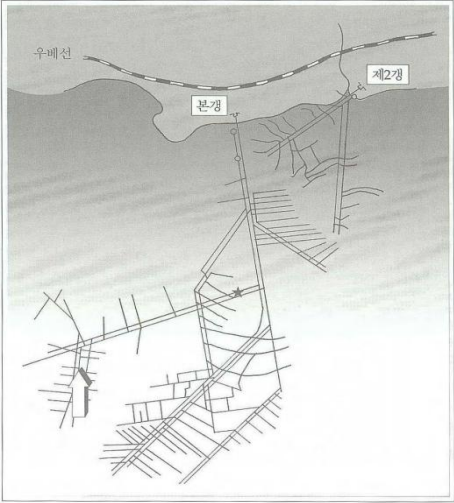
3) 일본의 ‘장생 탄광 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회’는 자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사비용(약 1억원)을 마련하여 탄광 갱구 발굴 공사(2024. 9. 23.)를 실시하였으며, 공사 시작 이틀차(2024. 9. 25.)에 탄광 갱구를 발굴하고 잠수조사를 두 차례(2024. 10. 25., 2025. 1. 31.- 2. 2.)에 실시했으나,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였음. 금년 4월 중 3차 잠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견을 표명함.⁴⁾

다만, 외교부는 장생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 파악 및 조선인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촉구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동사안이 UN 등 국제사회에 제기되어 외교적 문제로 다뤄지는 것보다 양자간 인도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장생 탄광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회'는 매년 장생 탄광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주히로시마 총영사관에서 동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음. 올해 추도식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참석하였음.

[참고자료 1] 장생 탄광 수몰 사고 개요

비고	내 용
장생 탄광 연혁	·야마구치현 우베시 요시키군 니시기와촌 도코나미에 위치 ·현재는 탄광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개의 배기·배수통 두 개만이 흔적을 남김 <장생탄광의 흔적>  – 종전 탄광회사측 사무실이 있었던 자리에는 추도 위령비가 건립 ·1932년 11월 본갱 개광(경영자: 야마다 신마쓰, 라이손 후치노스케) ·1942년 2월 3일 수몰사고 발생(본갱 폐쇄) ·1942년 6월 제2갱(장생탄광에서 도코나미역 방향에 위치) 개광 ·1942년 11월 제3갱(본갱 서쪽에 위치한 구로사키쪽) 개광 ·1945년 폐광
갱내 구조	 ★: 수몰지정으로 추정되는 곳 (갱구에서 약 1,010m에 위치)

비고	내 용
조선인 노무동원 실태	·(동원자 수) 총 1,630명 동원 계획 중 실제 1,258명 동원 ·(출신지) 경상북도 군위, 영천, 영덕과 경상남도 사천, 고성에 집중 ·(노무 실태) - 채탄부는 2교대로 투입: 6시부터 16~17시까지, 18시부터 다음 날 4~5시까지 - 모두 기숙생활이 강요되었으며, 감독관에 의하여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됨 - 탈출 시 구타 등의 제재가 가해짐
사고 경위	·(일시) 1942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사고내용) 바다를 향해 뻗어있는 본갱 약 1,010m 지점에서 갱내로 해수가 침투해 들어와 갱 전체가 해수에 잠기며 광부 180여명 사망 ·(사고원인) 버팀목의 지나친 제거, 채탄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채탄 등 무리한 조업 - 1905년 타 탄광에서 해수침수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오카광산감독서는 해저채굴제한을 시달하였는데, 장생탄광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는 등 무리한 조업을 함
사고 처리	사고 후 얼마 안되는 시간에 갱구를 널빤지로 봉쇄, 사고 발생 며칠 후 탄광회사에서 위패를 제작하였으며, 일종의 위로금이 지급되었음

자료: 「일본 조세이(長生)탄광 수몰사고 진상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를 바탕으로 재구성

문 의 처

02) 6788-5264